

## AVEVA Solutions Limited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중요:** 소프트웨어 설치 전 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주의 깊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본 계약")은 문서(하기 제 2 조에 정의됨)를 포함하는 본건 소프트웨어 제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귀하("고객" 또는 "귀하")와 AVEVA Solutions Limited, 또는 고객의 거주지에 따라 AVEVA Solutions Limited의 계열사("아비바" 또는 "당사")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및/또는 이용함으로써, 또는 팝업 창이 열릴 때 "수락"을 클릭함으로써, 귀하는 본 계약 조건 일체를 수락합니다. 귀하가 타인 또는 법인체를 대리하여 본 계약을 수락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가 이와 같은 타인 또는 법인체를 대리하여 본 계약을 수락하고, 이와 같은 타인 또는 법인체를 본 계약에 구속시킬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소프트웨어 발행(issue)과 사용 및 지원 하드웨어

**라이선스 사용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고객이 아비바에게 지불하는 요금으로 부가세 및 기타 모든 적용가능한 세금은 제외하며, 수시로 아비바가 정한다.

**라이선스 기간:** 어떤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고객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락받은 기간으로, 아비바가 정한다.

**유지보수판(Maintenance Release):** 제한없이 에러를 수정하거나 패치된 것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강화, 개선 또는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업 과정에서 수시로 아비바가 공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 제의하는 소프트웨어의 신규 버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지파일(Notice File):** 소프트웨어 내에 있는 파일을 의미한다.

**사용은:** 복사, 전송, 또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시스템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하드웨어 중 RAM에 로딩하거나 비소멸성 기억장치(예. 하드디스크, DVD ROM 또는 기타 저장장치)에 설치하거나, 그리고 고객측의 보안이나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백업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해당 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에 의한 아비바의 사전승인이 없다면, 단지 2개의 복사본 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이 문서의 전부 또는 어느 일부를 복사하지 아니하고 위 문서에서 어느 상표, 저작권 또는 소유권 통지를 제거하지 아니할 때, 문서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1.1 아비바는 이에 라이선스 기간(Licence Period) 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문서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독점적이고 이전불가, 양도불가 그리고 재라이선스가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고객에 대하여 부여한다.
- 1.2 고객은 모든 소프트웨어의 복사에 관하여 정확하고 최신의 사본 숫자의 기록, 복사 장소와 생성 일자를 유지하며 허가되지 않은 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1.3 첨부된 문서에 규정된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customise) 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복제, 수정, 개작, 병합, 번안, 디어셈블, 디컴파일, 리컴파일, 리버스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어느 일부에 기반하여 파생품을 만들거나, 아비바가 제공하지 않은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와 동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킬 수 없다.
- 1.4 고객은 다만 자기의 내부 업무 목적을 위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아비바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느 제 3 자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그리고/또는 문서를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없다. 고객은, 부당하게 유보, 지연 또는 조건부로 되지 않은 아비바의 사전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장소나 다른 장비로 이전할 수 없다.
- 1.5 고객이,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아비바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3 자를 의심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 그 혐의에 관하여 당연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아비바에게 통지해야 한다.
- 1.6 아비바는, 확인 그리고/또는 목록조사만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부여된 어느 제품 판매 코드를 변경, 개정,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1.7 고객은 통지 파일(Notice File)에 포함된 조건과 알림에 구속되는 데 동의한다.
- 1.8 아비바가, 유지보수판이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상 에러를 정정하기 위하여 발행되었다고 고객에게 통지한 경우, 고객은 유지보수판을 수령한 때로부터 7 일 이내에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유지보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 1.9 하기 제 1.10 조를 전제로 당사자들간에 달리 합의되거나 아비바가 자신의 웹사이트([www.aveva.com/policies/support/en](http://www.aveva.com/policies/support/en))에서 변경하지 않는 한 아비바는 소프트웨어의 현재 버전 및 그 직전 버전만을 보수한다.
- 1.10 아비바는 아비바 웹사이트([www.aveva.com/policies/eol/en](http://www.aveva.com/policies/eol/en))에 게시되는 자신의 단종 정책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단종”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 1.11 본 조의 어느 규정이 본 계약의 다른 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시험 소프트웨어(Trial Software)에 관하여 본 조는 이와 같은 상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다른 조건에 우선한다. 평가버전 라이선스(evaluation license)가 부여되었거나 소프트웨어가 교육, 베타 테스트, 또는 기타 비상업적 용도로 공급된 경우(“시험 소프트웨어”), 귀하는 일반적인 제작 용도가 아닌 이와 같은 목적으로만 시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귀하는 라이선스 파일이 인도된 날로부터 30 일의 기간 동안 시험 소프트웨어 평가한다. 귀하가 시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귀하는 유효한 라이선스를 득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고 귀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시험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여야 한다. 평가를 위하여 제공된 시험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아비바는 이에 대하여 보수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귀하는 귀하가 시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행하는 모든 연구나 개발은 전적

으로 귀하의 단독 위험으로 행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베타버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귀하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아비바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베타버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예정된 평가 및 테스트에 참여할 목적으로 동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귀하의 대리인을 제외한 어떠한 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요청을 받으면, 귀하는 베타소프트웨어에 대한 귀하의 평가 및 테스트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 1.12 아비바와 그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불법 복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프트웨어에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본의 설치 또는 사용을 탐지하고 동 불법 복제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전송하는 보안 메커니즘이 포함될 수 있다. 수집된 정보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된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이와 같은 정보의 탐지 및 수집에 동의하며, 또한 불법 복제본이 발견되는 경우 그 전송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 아비바는 또한 소프트웨어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잠금 장치, 라이선스 관리 소프트웨어 및/또는 라이선스 승인 키 (license authorization key)를 사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귀하는 동 조치의 목적을 회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아비바가 제공하는 필요한 잠금장치 또는 승인 키 없이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2. 문서

**문서:** 기술 서류, 프로그램 사양 및 운용 매뉴얼 일체를 포함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아비바가 제공한 문서.

- 2.1 고객은 오직 자신의 내부 사용을 위해서만, 아비바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동 문서에 대하여 상당한 복사를 할 수 있다.

## 3. 하드웨어

**지원 하드웨어(Supporting Hardware):**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아비바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동글(dongle) 또는 기타 물리적 장치.

- 3.1 고객은 아비바의 지시에 따라서 지원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 3.2 아비바가 제공한 지원 하드웨어는 아비바의 소유이다. 아비바는 적당하다고 여길 때 지원 하드웨어를 회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4. 기밀유지

**계열사:** 어느 한 당사자의 모든 자회사나 지주회사 및 그 당사자의 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를 포함한다.

**기밀정보는:** 어느 당사자 또는 계열사, 피고용인, 간부, 대표자 또는 타방이나 관련된 타방의 대표자들에게 조언하는 자(그들의 대표자들을 포함함)들에 의해 공개된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정보(기록되었든 보존되었든)를 의미한다 : 합리적인 사업가(business person)에 의해 비밀로 간주되는 다음에 관한 어떤 정보 : (i) 공개하는 당사자(disclosing party)의 사업, 일, 고객, 가격, 및 계획 ; 그리고 (ii) 공개하는 당사자의(또는 공개하는 당사자가 속한 회사의 어느 구성원의) 영업활동, 절차, 제품정보, 노하우, 디자인, 영업비밀 또는 소프트웨어.

- 4.1 각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중 언제나 그리고 기밀정보 수령일로부터 5년 간, 제 4 조 제 2 항에 의해 허가된 바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어느 기밀정보를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 4.2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a) 본 계약 상의 기밀정보를 공개받는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비바의 경우, 아비바를 도와 고객이 본 계약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 피고용자, 간부, 대표들이나 고문들에게.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알게 된 자신의 피고용자, 간부, 대표 및 고문들이 제 4 조 제 1 항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한다.
  - (b)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어느 행정기관이나 규제 당국이 요구할 경우.
- 4.3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 5. 보증

- 5.1 아비바는, 연속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에러 또는 바이러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는다. 에러나 바이러스의 존재가 본 계약의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 5.2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 시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에러를 발견하고,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내에 아비바가 그 에러를 알게 된 경우에, 아비바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 a) 그 소프트웨어 중 중대한 에러가 있는 부분을, 패치나 유지보수판 (아비바의 선택으로)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모든 상당한 노력을 다하거나; 또는
  - b)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또는
  - c)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계약 해지일에 소프트웨어 및 모든 복사본의 반환과 동시에 고객이 지불한 라이선스 사용료 (해지일까지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데 대한 상당한 비용을 공제하고)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단, 그 요건으로 i) 그와 같은 중대한 에러는, 아비바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수정, 변경 또는 추가에 기인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사용, 본 계약 조건 밖에서의 사용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도된 사용, 소프트웨어의 남용이나 변질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나 호환성 없는 장

비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기인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ii) 고객은 아비바가 그 결함이나 오류를 재설정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아비바가 결함이나 오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아비바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작동할지라도, 소프트웨어가 지원할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는 모든 하드웨어를 “호환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5.3 본 계약에 명확하게 정해진 바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문서 그리고 지원규정에 관한 모든 조건, 보증, 약속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법규, 보통법, 거래관습, 관습, 거래과정 또는 기타 다른 것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품질, 기능 또는 합목적성 또는 목적의 적합성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배제된다.

## 6.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세계 전역에서의 모든 특허,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데이터 베이스 권리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상의 기타 권리 (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및 이를 위한 모든 신청(출원)을 의미한다.*

- 6.1 아비바는 소프트웨어와 문서에 관한 모든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조의 어느 항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업로드 되거나 만들어진 데이터에 관하여, 고객이나 제 3 자에게 속한 어느 지적재산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 6.2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배상청구 이전의 12 개월 동안 아비바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라이선스 사용료만큼을 최대한의 책임으로 하는 조건으로, 아비바는, 소프트웨어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배상청구(“Infringement Claim”)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 3 자에게 지불하도록 관할 법원이 판정을 내린 모든 손해, 손실, 경비 또는 비용 에 대하여 정히 고객에게 배상한다. 단, 그 요건으로 고객은:
- (a) 제 3 자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어느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허가하거나 묵인하지도 않아야 한다;
  - (b) 소프트웨어의 최신 유지보수판(Maintenance Release )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사용이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방지할 수 있었어야 한다.
  - (c) 그와 같은 모든 배상청구시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아비바에게 통지한다;
  - (d) 아비바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느 배상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또는 어느 해결책에 동의하지도 않으며, 또는 반대로 어떠한 청구에 대한 아비바나 제 3 자의 항변을 방해하지 않는다;
  - (e) 어떠한 청구로 야기되는 모든 합의 및 소송에 관한 직접적이고 완전한 통제권을 아비바 또는 아비바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 (f) 협상 또는 소송의 수행이나 해결에 합당한 모든 협력을, 아비바와 아비바가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제공한다.

- 6.3 만약, 아비바가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가 제 3 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비바는 절대적인 재량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고객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취득한다;
  - (b) 소프트웨어를 변경, 수정 또는 조정하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c)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한다; 또는
  - (d)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고객이 지불한 라이선스 사용료 중 미사용 부분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 6.4 고객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업로드된 데이터나 생성된 데이터에 의하여 발생한 그리고 고객이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사용 또는 소유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청구의 결과로 아비바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책임, 경비 및 비용 (모든 법적 수수료를 제한 없이 포함하여)을 아비바에게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 6.5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고객이 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본 계약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는 즉시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 6.6 고객이 소프트웨어의 복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저작권 통지와 기타 모든 소유권의 범례가 소프트웨어의 각 사본이나 부분적 사본 상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 7. 책임의 제한

- 7.1 아비바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어느 데이터의 부정확이나 무효로 인하여 고객(또는 고객에 의하거나 고객을 통하여 배상 청구하는 어느 사람)이 입는 모든 손실 일체를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아비바가 그러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고객 (또는 고객에 의하거나 고객을 통하여 배상 청구하는 어느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이익의 손실, 영업의 손실, 영업권의 손실 그리고/또는 유사한 손실; 예상 되는 절약비용의 손실; 상품의 손실; 계약의 상실; 사용의 상실; 데이터나 정보의 손실; 어느 특별하거나 간접적이거나 결과적 또는 순수한 경제적 손실, 경비, 손해, 요금이나 비용.
- 7.2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 불법행위 (법적 의무에 대한 과실이나 위반을 포함하여), 허위진술, 배상이나 별도로 소프트웨어의 성능이나 예상 성능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비바의 모든 책임은 고객의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당해 년에 지불된 라이선스 사용료의 100%로 제한된다.
- 7.3 소프트웨어가 어느 제 3 자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러한 제 3 자는 간접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 제 3 자는 모든 암시적 보증 (만족할 만한 품질, 상품성, 권리의 비침해성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제한 없는 암시적 보증을 포함하여)을 부인한다.

7.4 제 7 조 제 1 항, 제 7 조 제 2 항, 및 제 7 조 제 3 항에 명시된 제한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로 적용한다.

## 8. 감사권

8.1 30 일의 서면 통지로 아비바는 귀하의 아비바 소프트웨어 사용을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귀하는 아비바의 감사에 협조하고 적절한 지원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제공하기로 한다. 귀하는 서면 통지로부터 30 일 이내에 귀하의 라이선스 권리를 초과하여 사용한 소프트웨어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미지급시 아비바는 라이선스, 보수, 서비스 및/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비바는 아비바가 오용사실을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에 협조하는데 있어 귀하에게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9. 정지와 종료

*지배권의 변경:* 어느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렇게 하기를 중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발생한다.

*지배권:* 은 법인에 관하여, 그 법인의 제반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는 어느 사람이나 단체의 권한을 의미한다.

- (a)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나 의결권의 소유에 의해; 혹은
- (b) 그 법인이나 기타 다른 법인을 규제하는 합헌적인 문서나 정관 또는 다른 문서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의해

9.1 아비바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 권리 매니저(Licence Entitlement Manager)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고객에게 서면통지를 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a) 고객이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고객이 본 계약의 어느 조건에 대한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위반 (감사 결과로 확인된 위반을 포함하여) 상태에 있으며, 그러한 위반이 해결될 수 없거나, 고객이 그러한 위반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고 30 일 내에 그 위반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 (c) 고객이나 계열사의 지배권의 변경이 있을 경우;
- (d) 고객이 채무를 지불할 수 없거나 파산하거나, 회사 청산에 대한 명령이나 결의의 대상이 되거나, 자기 자산의 전부 또는 어느 실질적인 부분에 관한 경영 관리인이나 기타 관재인, 관리인, 수탁자, 법정관리인이나 유사한 관리가 지명되거나, 채권자들과 어느 화해나 협정을 체결하거나 제안하거나, 또는 해당 관할권에서 어느 유사한 사건이나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 (e) 아비바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고객의 행위가 아비바에게 수출통제법 및/또는 재제의 위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2 계약 해지는 해지 전에 발생한 어느 권리나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3 어느 사유로든, 본 계약이 해지되면:

- (a)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중단된다;
- (b) 고객이 아비바에게 부담하는 모든 금원은 만기에 이르며,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 (c) 고객은 자신이 소유, 유치 또는 관리 중인 소프트웨어와 문서의 모든 사본과 지원 하드웨어(Supporting Hardware)를, (아비바의 선택으로) 즉시 파기하거나 아비바에 반환해야 하며, 파기의 경우에는 파기했다는 사실을 아비바에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9.4 본 계약의 해지 및 해지 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계속하여 유효하도록 의도된 본 계약의 모든 규정은, 완전한 효력이 있다.

## 10. 제 3 자의 권리

10.1 본 계약의 당사자 및 그들의 개별적 승계인들과 허가된 양수인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을 실행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 11. 불가항력

11.1 제 11 조 제 2 항의 준수에 따라서, 만일 본 계약상 어느 의무의 이행 지체나 불이행이 합리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사건, 상황 또는 원인 (“불가항력적 사건”)에서 초래된다면,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대한 위반 상태가 되지 않으며, 계약 상의 어느 의무의 이행 지체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으로 연장 받을 수 있다. 단, 지연이나 불이행이 3 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4 일의 기간을 정한 서면통지를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2 영향 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 (a) 계약 이행에 있어서 불이행이나 지연을 초래한 불가항력적 사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b) 불가항력적 사건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모든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취해야 하는 사전 주의조치를 취했다라도 그 불가항력적 사건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는, 타당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 (c) 불가항력적 사건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계약 이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했으며 지속적으로 경주해야만 한다.

## 12. 통지



12.1 귀하가 아비바와 분쟁이 있거나, 배상조항에 따라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거나, 또는 귀하가 채무불이행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귀하는 즉시 Aveva Group Plc, High Cross, Madingley Road, Cambridge CB3 0HB UK (참조: Group Legal Counsel)로 영어로 서면 통지한다.

### 13. 법의 준수

13.1 계약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유지하고 있다고 표명하고 보증하며 확약한다.

13.2 고객은 자신이 위치한 나라의 준거법과,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국가의 모든 적용 법규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3.3 고객은 지금까지 어느 적용 법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적용 법규정에 대한 위반이나 위반을 상당히 시사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보고한다.

### 14. 수출

영국, 유럽연합, 미국 및 기타 관련 국가의 수출통제법 및 규정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된다. 귀하는 이러한 수출통제법이 소프트웨어(기술 자료 포함)의 이용 및 본 계약에서 정한 기타 서비스 또는 상품에 적용됨에 동의하며 소프트웨어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대해 고객이 아비바에 공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귀하는 모든 수출통제 법률 및 규정(“간주 수출” 및 “간주 재수출” 규정 포함)을 준수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귀하는 서비스(또는 직접 상품)에 기인한 어떠한 데이터, 정보, 프로그램 및 자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제법을 위반하여 수출되지 않고,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의 확산 또는 미사일 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수출통제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귀하는 고객의 본 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에 대해 아비바의 책임을 면제, 방어하고 아비바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 15. 권리포기

15.1 본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제공된 어느 권리나 구제책을 행사하는데 있어, 당사자의 불이행 (failure)이나 지연이 해당 권리나 구제책 혹은 다른 권리나 구제책에 대한 권리 포기가 될 수는 없으며, 해당 권리나 구제책 혹은 다른 권리나 구제책의 추가 행사를 차단하거나 제한 할 수도 없다. 그러한 권리나 구제책에 대한 어느 일회적(single) 또는 부분적 행사도 해당 권리나 구제책 혹은 다른 권리나 구제책에 대한 추가 행사를 차단하거나 제한 할 수 없다.

### 16. 분리

16.1 어느 법원이나 관할 당국이 본 계약의 어느 규정 (또는 규정의 일부)이 무효이거나 불법이거나 실행 불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한다면, 그 규정이나 규정의 일부는, 필요한 범위만큼,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본 계약의 다른 규정의 유효성과 실행 가능성에는 영향이 없다.

16.2 계약당사자들은 그러한 규정을 적법, 유효하고 실행가능하며, 최대한 가능한 범위로 당사자들의 원래의 상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한다.

## 17. 변경

17.1 본 계약의 조항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계약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들)이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 18. 양도

18.1 귀하는 타인 또는 단체에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본 계약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또는 여하한 서비스 또는 소유권을 제공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19. 언어

19.1 본 계약은 영문으로 작성된다. 본 계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19.2 본 계약에 의거하거나 관련되어 송부되는 모든 통지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본 계약에 의거하거나 관련되어 제공되는 모든 기타의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거나, 인증된 영어 번역을 수반해야 한다.

## 20. 준거법 및 관할

20.1 본 계약 그리고 계약이나 계약 상의 주제나 형성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배상청구는 잉글랜드(England) 및 웨일즈(Wales)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각 당사자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원을 본 계약 그리고 계약이나 계약상의 주제나 형성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배상청구 해결을 위한 전속관할로 한다는 점에 합의하며 이는 취소 불가능하다.

20.2 어느 특정 법률을 언급하는 경우 동 법률의 개정, 확대, 적용, 또는 재제정을 고려하여 당시 유효한 법률을 의미하며, 당시 유효한 동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을 포함한다.